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78
----------	------

2025년 9월 12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년 8월 11일

다.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라. 상 정 일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9월 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망우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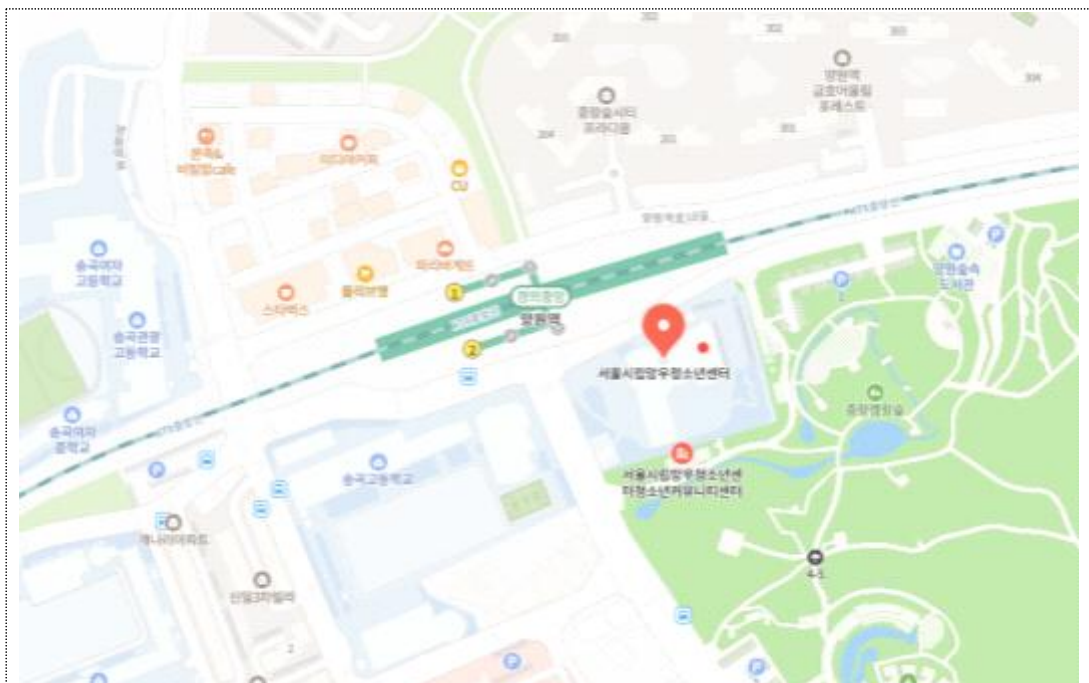
- 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56
- 개관일자 : 2006. 4. 4.
- 시설규모 : 대지 $7,710m^2$ / 연면적 $5,150m^2$
- 주요시설 : 미디어 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힐링테라스, 소극장, 수영장, 체육관, 캠핑장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954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448백만원, 운영비 698백만원, 사업비 2,332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476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망우 청소년센터(이하 ‘망우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1.~2028.12.)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56
- **시설규모** : 대지 7,710m² / 연면적 5,150m²
- **개관일자** : 2006. 4. 4.
- **주요시설** : 미디어 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힐링테라스, 소극장, 수영장, 체육관, 캠핑장 등
- **위탁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954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448백만원, 운영비 698백만원, 사업비 2,332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476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망우청소년센터는 2006년 개관하여, 2016년부터 10년간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하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의 시설로, 현원 52명(정규직 20명, 계약직 32명, 2025.6.30. 기준)의 직원이 49억 5천 4백만원(2025년)의 예산으로 9개 분야, 37개 사업, 1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망우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 ('06.1.1.~'08.12.31.)	(사)삼동청소년회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 ('09.1.1.~'10.12.31.)	(사)삼동청소년회	재계약
3차 위탁	3년 ('11.1.1.~'13.12.31.)	(사)삼동청소년회	공개모집
4차 위탁	2년 ('14.1.1.~'15.12.31.)	(사)삼동청소년회	재계약
5차 위탁	3년 ('16.1.1.~'18.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공개모집
6차 위탁	2년 ('19.1.1.~'20.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재계약
7차 위탁	3년 ('21.1.1.~'23.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공개모집
8차 위탁	2년 ('24.1.1.~'25.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재계약

〈 망우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5.6.30. 기준)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촉탁직)
정원	28	28	1	-	2	2	4	7	8	2	2	-	-	-
현원	52	20	1	-	1	2	5	8	2	1	-	32	32	-

〈 망우청소년센터의 사업구성 〉

연번	분야	주요 사업 내용	계획
	총계	9개 분야, 37개 사업, 136개 프로그램	
1	상담지도사업	꿈터심리상담, 지역연계사업, 특성화사업 등	3개 사업, 7개 프로그램
2	교육문화사업	자기계발프로그램(힐링여가) 등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3	생활체육사업	수영교실 휘트니스 주말체육교실 청소년체육자원 등	8개 사업, 17개 프로그램
4	목적사업	네트워크사업 청소년조직활동,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등	8개 사업, 36개 프로그램
5	민간위탁사업	방과후아카데미 서울유스데이 찾아가는센터 모의유엔대회 등	10개 사업, 70개 프로그램
6	보조금사업	대안학교, 청소년전용시간요일제 등	3개 사업, 5개 프로그램
7	자본형성사업	부대수입(청소년시설 산책, 시설보강(민간대행사업비) 등	2개 사업
8	시설이용료	시설사용료, 주차요금수입, 입장료수입 등	1개 사업
9	기타사업	부대수입(식당, 개인사물함운영, 커뮤니티 공과금) 등	1개 사업

〈 2025년 망우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수정)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 예산	계		4,954,383	100%	4,998,190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690,226	34.1%	1,642,483	32.9%
		민간위탁사업비	150,873	3.0%	150,000	3.0%
	보조금	국비보조금	202,040	4.1%	267,000	5.3%
		시비보조금	39,030	0.8%	0	0%
		구비보조금	65,200	1.3%	67,000	1.3%
	사업수입	시설이용료수입	2,428,332	49.%	2,520,366	50.4%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	1,000	0.1%	1,000	0.1%
		이월금	92,436	1.8%	90,000	1.8%
		예수금수입	282,225	5.6%	257,320	5.1%
		이자수입	801	0.1%	801	0.1%
		기타수입	2,220	0.1%	2,220	0.1%
세출 예산	계		4,954,383	100%	4,998,190	100%
	인건비		1,448,273	29.2%	1,585,535	31.7%
	운영비		697,771	14.1%	582,832	11.7%
	사업비		2,332,153	47.1%	2,397,834	48.0%
	사업외지출		282,225	5.7%	257,320	5.1%
	예비비		50,528	1.0%	52,069	1.0%
	지난년도지출		62,705	1.2%	80,000	1.6%
	반환금		27,448	0.5%	1,500	0.1%
	일반관리비		1,100	0.1%	1,100	0.1%
	이윤		-	0%	0	0%
	부가가치세		52,180	1.1%	40,000	0.8%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3년도의 성과를 2024년 8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이를 기반으로 2025년 하반기의 망우청소년센터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의회가 본 동의안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은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망우청소년센터 운영평가(2023년)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주)가치경영원]
- 평가기간 : 2023년도(실시기간 2024.3.~8.)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93.44점(100점 만점)

- 2024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3.1.~12. 성과) 결과 연차사용 촉진, 교육훈련 실적 감소, 안전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 양적·질적 성과 측정 방안 모색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2024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 사항 〉

-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연차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1인당 평균 2.9일의 연차수당이 발생되고 있어, 연차사용 촉진을 강화하고 연차저축제(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도입을 권고함
- 교육훈련을 위한 개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전체 교육예산이 8,260천원으로 전년도 1,600천원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교육(전년도 91시간 → 당해연도 78시간), 직무교육(전년도 804.3시간 → 당해연도 643.5시간)의 1인당 교육훈련 실적 감소가 발생함
- 평가년도 안전사고 발생 건수 4건으로,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기관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고객 대상 안전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 활동 확대를 제안함
- 재난안전조직상 운영부장의 역할과 책임부여가 모호하여 명확화가 요구됨
- 언론홍보나 대외 수상실적 외에 대외적 우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므로 양적,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제안함

- 운영평가 결과에서 망우청소년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고객 대상 안전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 활동 확대, 재난 안전 조직상 운영부장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를 제안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 운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망우청소년센터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시설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평생교육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망우청소년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시설 점검 및 관리,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10년간 본 시설을 운영한 수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망우청소년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개인정보 관리 미흡(보안 설정 누락)	조치 완료
	민간위탁계좌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세 미처리	조치 완료
	사업소분 주민세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권고사항)	조치 완료
	사업수입 매년 정산 권고(권고사항)	조치 완료
2023년	화장실 일상점검표 및 불법촬영장비 점검표 관리 소홀	조치 완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미반환	조치 완료
	현금 시재액의 수입 인식 시기 오류	조치 완료
2024년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미수립	조치 완료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증빙 서류 미흡(2건)	조치 완료

- 한편, 망우청소년센터는 2025년 기준 생활체육사업(수영교실, 휘트니스, 주말체육교실, 청소년체육지원 등), 목적사업(네트워크사업, 청소년조직활동, 청소년자원 봉사활동 등), 민간위탁사업(방과후아카데미, 서울유스테이, 찾아가는센터, 모의유엔 대회 등) 등 9개 분야, 37개 사업, 136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2024년 청소년이용률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상 최소 이용률인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다만, 2023년 청소년이용률(63.8%)과 비교할 때, 2024년 청소년이용률(86.7%)이 크게 상승(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및 프로그램별 비교(효과성 비교 등)를 통해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망우청소년센터의 사업 실적 〉

(단위 : 명)

연도	계획	실적	달성률	청소년실적	청소년이용률
2023	518,727	486,511	93.8%	310,274	63.8%
2024	399,334	322,723	80.8%	279,665	86.7%

※ 여성가족부,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57p

다. 이용자 관리

☐ 업무내용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자립형 시설인 망우청소년센터의 정원이 28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20명(현원)만을 운영하고 있고, 비정규직인 계약직은 32명으로, 계약직의 비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이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이 운영비 절감 또는 마련을 위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평생교육국의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센터 중 자립형시설과 지원형 시설

- 구분 기준 : 수익시설(수영장 등)의 존재 유무
- 자립형시설 (14개소) : 문래, 목동, 수서, 노원, 강북, 구로, 성북, 마포, 은평, 성동, 금천, 망우, 동대문, 서대문,
- 지원형시설 (7개소) : 서울, 강동, 중랑, 창동, 광진, 화곡, 보라매

- 평생교육국이 청소년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경우,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저하, 부적정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리·감독하지 못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만족도와 이용률이 감소할 수 있는바,
- 적정수준의 지도·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분야에 최소한의 이해 또는 소양 등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되며, 청소년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추진 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78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망우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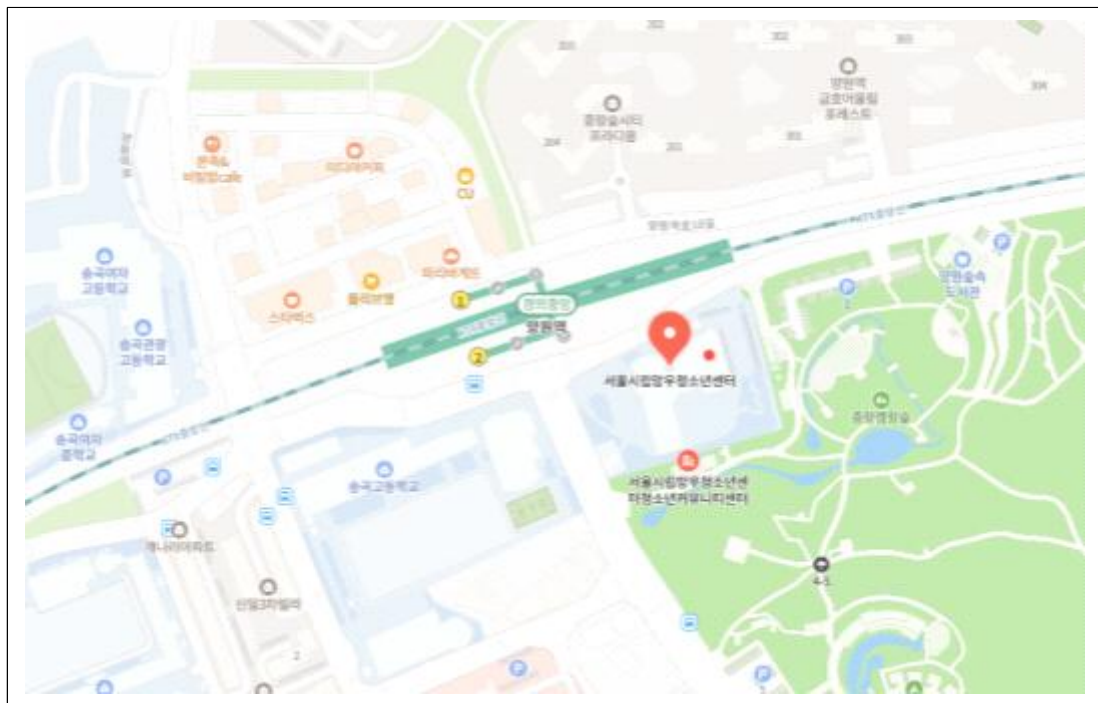
- 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56
- 개관일자 : 2006. 4. 4.
- 시설규모 : 대지 7,710 m^2 / 연면적 5,150 m^2
- 주요시설 : 미디어 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힐링테라스, 소극장, 수영장, 체육관, 캠핑장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6.1.1. ~ 2028.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954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448백만원, 운영비 698백만원, 사업비 2,332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476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02-2133-4124)